

— 구 미 시 세 감 면 조 례 개 정 조 례 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. 12. 31일로 만료됨에 공익상 기타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2003. 12. 31일까지 연장하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

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자동차세 감면 확대(제2,4조)
 -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⇒ 2000cc이하 승용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
-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 변경(제7조)
- 전용면적 85㎡이하 임대 목적 공동주택과 부속토지에 지방세 감면 기준을 60㎡이하로 변경(제12조)

-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(제14조)
-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도시계획세 면제하고 재산세, 종토세를 50%경감(제16조 신설)
-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, 종토세 면제(제26조 신설)
-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용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(제27조 신설)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지방세시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
- 지방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수정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시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은 시한부 조례로서 '98. 1. 1 ~ 2000. 12. 31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2001년부터 적용할 구미시세감면 조례안은 상부 기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하되 일부 법령개정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-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